의안 번호	86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9.)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10.29.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0. 15. 백승규 의원 등 22명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10.29.)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백승규 의원)

○ 창원시에 장기간 거주한 시민의 경우 그의 부모가 비록 창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그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창원시 장기 거주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관계법령 저촉 여부: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라. 입법예고(2026. 10. 15. ~ 10. 21.):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전현주)

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6조) 봉안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사용자의 범위)	현행 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생 략) ②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생 략)
	개정 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만 해당 유골이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에 이미 안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 (안 부칙 제2조) 사용자의 범위 확대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함.

부칙 안 제2조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시립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6조제2항제1호의2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시립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유골이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함.

○ 안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조례 시행 이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시행 전 사망한 부모에 대해서는 확대된 사용 자격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부서 추계에 따르면 관외 거주 부모의 안치를 허용할 경우 연간 450~850기의 추가 수요가 예상됨. 다만, 2026년 제3봉안당 개관으로 전체 봉안 능력이 98,902기로 확충되었고, 조례 개정 전후 만장 예상 시점도 2035년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장기간 창원시에 거주한 시민의 장례 부담을 경감하고 시립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조례 개정 이후 실제 이용 실적과 잔여 봉안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중장기 시설 확충 계획 및 재정투자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수정안)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86호 관련

제 안 일 자 : 2026. 10. 29.
제 안 자 :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배우자 부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만 해당 유골이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에 이미 안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로 수정함.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2 전단 중 “사람”을 “사람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붙임 1 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1의2.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만 해당 유골이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에 이미 안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 ----------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 ---------- ---------- ----------. 2. ~ 4. (현행과 같음)